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가.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의거 기록물의 보존·관리 및 활용, 기록물 보존분담 등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

ㅇ 제4조(분장사무) 제3항 총무과의 분장사무중 추가

-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

4. 관련법령

가.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 중 기록을 선별·활용 및 기록물 보존 분담을 위한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」에 의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 하고, 그 사무에 관한 분장 내역중 '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'을 「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4조 3항 총무과의 분장사무에 삽입코자 하며

○ 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」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국가기록원 및 경상북도의 권고사항에 그 법적근거가 타당하고 사무의 내용이 명확한 바 일부 조례개정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